

의안번호	제 327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5월 일 (제 310 회)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지숙 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5월 1일

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1일

발 의 자 : 정지숙, 최병윤, 김영주  
김양희, 박종성, 유완백  
이수완

## 1. 제정이유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청남대 입장료 면제조문 신설과 중복 면제조항 정리 및 2013오송화장품·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변경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 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 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 
→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 
(안 제4조제2항제5호)
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제1항  
→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

(안 제4조제2항제6호)

·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도민

→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신설

(안 제4조제2항제6호)

나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→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(안 제4조제2항제10호)

다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: 2천원 할인(단,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)

→ (안 제4조제3항제3호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관광환경국 청남대관리사업소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없음.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2. 6세 이하의 영·유아
3.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
4.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6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7.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
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~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, 1~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.
9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
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

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. 단,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입장료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<u>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</u></p> <p>2. <u>6세 이하의 영·유아</u></p> <p>3. <u>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</u></p> <p>4. <u>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</u></p> <p>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</p> <p>6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자</p> <p>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해당하는 자</p> <p>8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자</p> <p>9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~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, 1~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.</p> <p>10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</p> <p>11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</p>	<p>제4조(입장료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<u>국빈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</u></p> <p>2. <u>6세 이하의 영·유아</u></p> <p>3. <u>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</u></p> <p>4. <u>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</u></p> <p>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</p> <p>6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</p> <p>7.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</p> <p>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~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, 1~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.</p> <p>9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</p> <p>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</p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

1~2. (현행과 같음)

(신설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

1~2. (현행과 같음)

3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: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. 단,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